

## 【 5 】 양주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1999. 12. 13.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수입증지 판매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지정한 자에 한하여 판매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신고제로 완화함(안 제7조, 제9조)
- 나.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변경 등에 있어 사유발생 예정 10일전에 군수, 읍면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2일전까지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 함(안 제11조)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중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를 “판매인이 될 수 없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판매인 신고) ①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판매인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판매장소에 별표 2의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판매인의 명의·위치변경, 판매해제) ①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2일전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인 명의(위치)변경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2일전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해제 신고서와 신고필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증자의 공급) 군에서 발행하는 증자는 군 금고를 통하여 공급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중 “10일”을 “2일”로 하며, “판매인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판매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단서중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을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인의 해제로 인한 때에는”으로 한다.

별표 제1호 서식 및 별표 제2호 서식을 각각 별표1, 별표 2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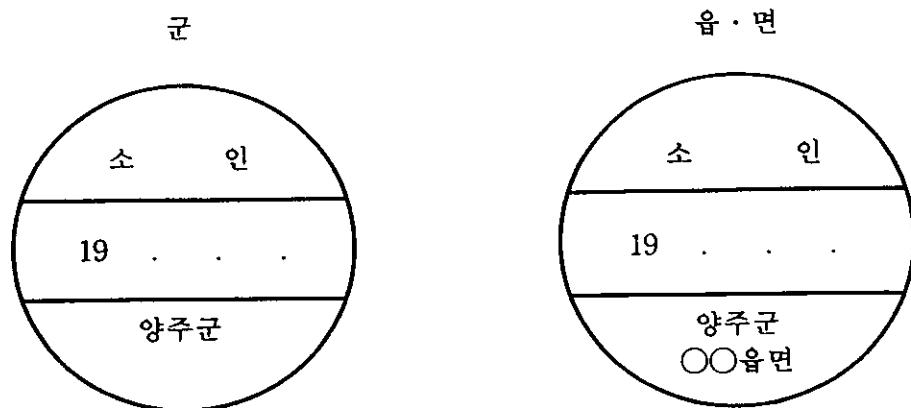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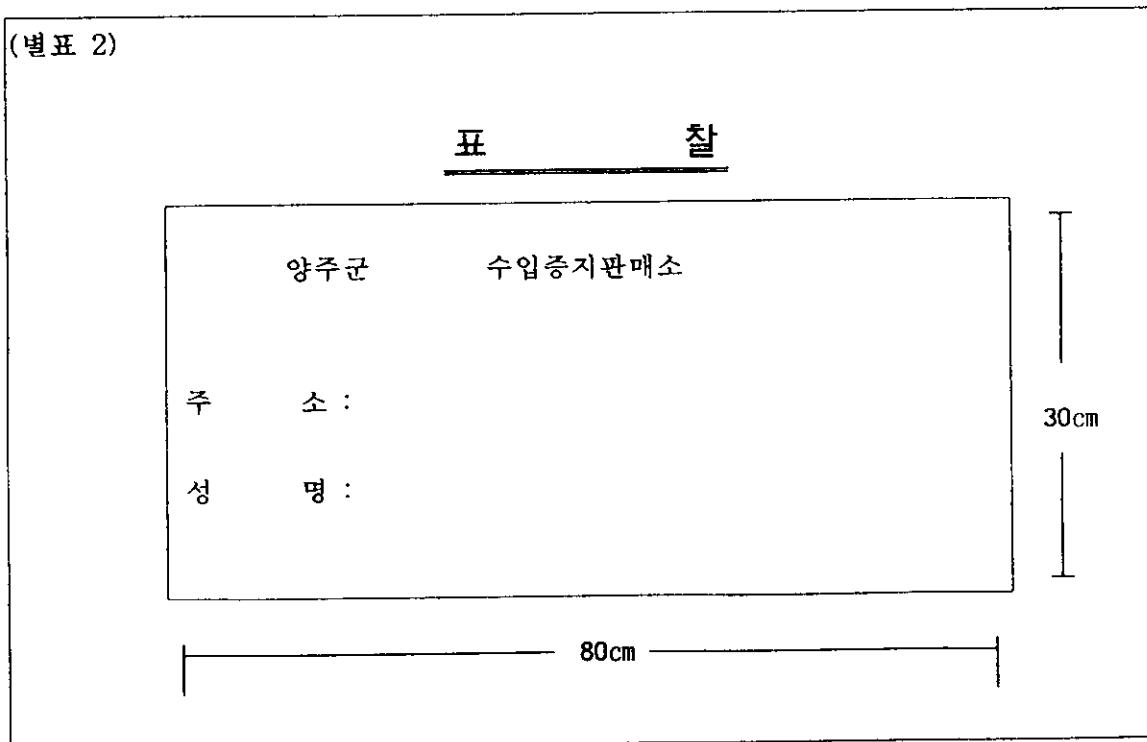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소 인 규 격 (지름 2.5cm)



(별표 2)



(별지 제1호 서식)

## 수입증지판매인 신고서(제9조제1항 관련)

## 주 소 :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양주군의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1. 수입증지판매소 예정위치

(에서 미터)

## 2. 직업 :

### 3. 첨부서류: 판매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월일

신고인 성명 (인)

양주군수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 수입증지 판매인 신고필증(제9조제2항·관련)

## 주 소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양주군수입증지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주군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필증을 교부합니다.

#### 1. 수입증지판매소 위치:

(에서 미터)

## 2. 직업 :

내 월 일

# 양주군수

(별지 제8호 서식)

## 수입증지 판매인 명의(위치)변경 신고서(제11조 관련)

신고번호 제 호		신고 년월일		년 월 일
판매인	판매소위치	명의 (위치) 변경 요구자	판매소 위치	
	주 소		주 소	
	성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명의(위치)변경사유				

위 사유에 의거 판매인의 명의(위치)를 변경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인)

양주군수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 수입증지 판매해제 신고서(제11조 관련)

신고번호 제 호			신고 년월일	년 월 일
판매인	소재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유발생 년월일			
신고사항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인)

양주군수 귀하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7조(판매인의 지정)</u> ①증자는 군수 및 읍·면장이 지정한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p> <p>②군수·읍·면장은 증자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증지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③직장 새마을금고, 직장공제회등 직원복지회(이하 "직장금고"라 한다)에서 판매인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④직장금고에서는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와 판매인 지정이 곤란할 때에는 직장금고 민원담당공무원중 판매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p><u>제8조(판매인의 결격요인)</u>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p> <p>1.~ 4.(생략)</p>	<p><u>제8조(판매인의 결격요인)</u>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인이 될 수 없다.</p> <p>1.~ 4.(현행과 같음)</p>
<p><u>제9조(판매인 지정 신청)</u> ①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관계증명서를 첨부 군수에게 기타 판매인 지정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직장금고가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p>	<p><u>제9조(판매인 신고)</u> ①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군수는 판매인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직장급고, 이사장, 직원공제회장등 직원복지회 회장(이하“이사장”이라 한다)이 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산하 직장급고에 증지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받은자의 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삭재</p> <p>④ 군수·읍·면장은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고 성명, 판매소의 위치, 증지 교부를 받을 군명을 군에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p> <p>⑤ 읍·면장이 판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p>	
<p>제10조(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제10조(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판매장소에 별표2의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p>
<p>제11조(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p> <p>①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10일전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읍·면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1조(판매인의 명의·위치변경, 판매해제)</p> <p>①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2일전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인 명의(위치)변경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2일전에 제9호 서식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해제 신고서와 신고필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u>제12조(판매소의 위치)</u> 증지판매소는 민원 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 직장 금고는 제7조제4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p>	<p><u>제12조(증지의 공급)</u> 군에서 발행하는 증지는 군 금고를 통하여 공급한다.</p>
<p><u>제13조(지정의 취소)</u> ① 군수·읍면장은 판매인으로부터 폐지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지정판매인이 이 조례에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읍·면장은 판매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는 군수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p>	<p>&lt;삭 제&gt;</p>
<p><u>제14조(판매인의 승계)</u> ① 판매인의 사고,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제9조에 의한 판매인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u>제14조(판매인의 승계)</u> ----- ----- ----- 2일 ----- 판매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u>제17조(변상책임)</u> ① 판매인으로 지정된자가 증지를 오손 또는 채손한 경우에는 증지 제조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p><u>제21조(판매수익금의 관리)</u> ① 직장금고에서 증지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익금은 직장금고 설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간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p>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증지의 환매) ①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 받거나 또는 타 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u>승계</u>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청구할 수 있다.</p>	<p>제25조(증지의 환매) ①----- ----- ----- <u>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인의 해제로 인한 때에는-----</u> -----</p>

## 양주군수입증지조례

[1970. 12. 5]  
[조례 제213호]

개정 1971. 4.13 조례 제 298호  
 개정 1972. 2.10 조례 제 313호  
 개정 1972. 4.22 조례 제 319호  
 개정 1976. 8.16 조례 제 466호  
 개정 1976.10.15 조례 제 471호  
 개정 1979. 2.27 조례 제 618호  
 개정 1980.12.31 조례 제 724호  
 개정 1982. 4. 7 조례 제 808호  
 개정 1982. 6.14 조례 제 844호  
 개정 1984. 2. 1 조례 제 950호  
 개정 1985. 7. 1 조례 제 1039호  
 개정 1985. 9.30 조례 제 1060호  
 개정 1986. 6.18 조례 제 1116호  
 개정 1987. 4. 2 조례 제 1152호  
 개정 1988.10.17 조례 제 1224호  
 개정 1991.11. 1 조례 제 1391호  
 개정 1997. 7. 7 조례 제 1628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의 발행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양주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①양주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양주군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케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조(증지의 발행)** ①증지는 양주군의 명의로 정한다.

## 제6편 재무 제3장 관세·세외수입 양주군수입증지조례

②군수는 회계년도마다 증지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년1회 발행할을 원칙으로 한다.

③증지의 조제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제 4 조의2(수입증지 요금 계기의 사용)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고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 기관명

3. 발행 년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③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 개시일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계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 5 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 운동 및 자연보호 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 6 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경기도 수입금 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일정수관(분임경리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인수한 증지는 양주군 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③군이 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는 전항에 준하여야 한다.

제 7 조(판매인의 지정) ①증지는 군수 및 읍·면장이 지정한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②군수·읍·면장은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중에서 증지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직장 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등 직원복지회(이하 "직장금고"라 한다)에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직장금고에서는 판매증서원을 둘 수 없는 경우와 판매인 지정이 곤란한 때에는 직장금고 민원담당공무원중 판매책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편 제2부 제3장 관제·세외수입 양주군수입증지조례

제8조(판매인의 결격요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과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관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9조(판매인 지정신청) ①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관계 증명서를 첨부 군수에게 기타 판매인 지정온

용·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장금고가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직장금고, 이사장, 직원공제회장등 직원복지회 회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인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산하 직장금고에 증거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받은자의 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1985.7.1 조례 제1039호

④군수, 읍·면장은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고 성명, 판매소의 위치, 증지교부를 받을 군명을 군에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⑤읍·면장이 판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인의 의무) ①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①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10일 전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 읍·면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판매인이 증거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수입증거 판매인 지정서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소의 위치) 증거 판매소는 민원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내에 증거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 직장금고는 제7조 제4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

제13조(지정의 취소) ①군수, 읍·면장은 판매인으로부터 폐지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6편 재무 제3장 관재·세외수입 양주군수입증지조례

② 지정 판매인이 이 조례에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읍·면 장은 판매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판매인의 승계) 판매인의 사고,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의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판매 또는 그 등거가족의 신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판매인이나 기타 관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자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판매인의 판매장소(주소지)를 변경하였을 때

2. 판매인이 사망한 때

3. 판매인이 30일이상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소가 불명한 때

4. 판매인이 무능력한 자가 된 때

제16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증치매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 1985. 7. 1 조례 제1039)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고에서는 제3항의 증지 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삭제 1985. 7. 1 조례 제1039호)

제17조(변상책임)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 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정액판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제19조(판매인의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 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 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 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사용에 의한 수익금은 조정카드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인영된 증지는 "결손"소인을 하

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1조(판매수익금 관리) ①직장금고에서 증지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익금은 직장금고 설치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간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간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증지진위조사)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 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증지의 소인) 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하며, 소인의 규격은 별표 제1호 서식과 같다.

제24조(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를 무효로 한다.

제25조(증지의 환매) ①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타자치 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청구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전항의 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군금고에서는 전항의 환매중에 의거 청구인에게 제16조 제5항의 매수 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제26조(증지의 교환) ①판매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로서 오염, 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교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에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군수는 전항의 교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별지 제4호 서식의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③군금고에서는 전항의 불출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 비치 및 검사) ①판매인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증지의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출납정리) 출납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증지 출납부를 비치하

## 제6편 재무 제3장 관재·세외수입 양주군수입증지조례

고 증지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9조(보고) ①금고에는 매일 증지 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은 매일 증지 수입료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1970. 12. 5 조례 제 213 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양주군 조례 제200호 양주군 수입증지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 판매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 또는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1971. 4. 13 조례 제 298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72. 2. 10 조례 제 313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72. 4. 22 조례 제 319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76. 8. 16 조례 제 466 호)

①이 조례는 197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군수는 금고 또는 소속 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와 그 원판을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기하여야 한다.

③종전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와 교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증지 표면 가격에 이를 교환하여야 한다.

## 부 칙 (1976. 10. 15 조례 제 471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79. 2. 27 조례 제 618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12. 31 조례 제 724 호)

- ①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조례를 공포한 당시 양주군 조례 제213호(1970.12.15)를 폐지한다.

부 칙 (1982. 4. 7 조례 제 808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6. 14 조례 제 844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1 조례 제 950 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판매인 지정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5. 7. 1 조례 제 1039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9. 30 조례 제 1060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6. 18 조례 제 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4. 2 조례 제 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0. 17 조례 제 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1. 1 조례 제 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편 재무 제3장 관재·세외수입 양주군수입증지조례

부 칙 (1997. 7. 7 조례 제162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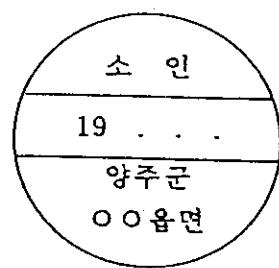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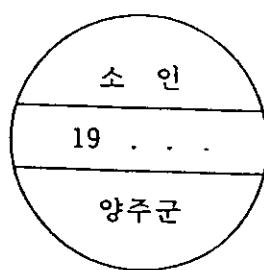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서식)

### 소인규격(지름 2.5cm)

五

四



(별표 제2호 서식)

표  
찰

양주군 수입증지판매소  
주 소 :  
성 명 :

30cm

— 80cm —

제6편 재무 제3장 관재·세외수입 양주군수입증지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수입증지판매인지정신청서

주 소 :

설명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이 양주군의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니 판매인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수입증지 판매소 예정 위치

(에서 m)

- ## 2. 직업 :

- ### 3. 첨부서류 : 인감계, 신원증명서, 위치도

— १० —

신청인

21

# 양 주 군 수

(별지 제2호 서식)

제 · 호

## 수입증지판매인지정서

성명 :

양주군 수입증지 조례 제7호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주군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 함.

### 1. 수입증지 판매소 지정위치

(에서 미덕)

## 2. 작 업

तीर्थ

## 양 주 군 수

## 제6편 재무 제3장 관제·세외수입 양주군수입증지조례

(별지 제3호 서식)

수입증지매수(출납, 보관, 교환, 환매)청구서

구분 권종	재고량		청구(교환, 환매)량		공제액 (청구액의 5/100)	현금납부 (지불) 액	비고 (사유)
	매수	금액	매수	금액			
계							
· 10원							
4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700원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매수(교환, 환매) 청구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수입증지불출(교환, 환매)증

No.			No.		
수입증지지급(교환, 환매)원부			수입증지지급(교환, 환매)증		
판 매 인	주 소		판 매 인	주 소	
성 명			성 명		
액 면 권	매 수	금 액	액 면 권	매 수	금 액
10,000원	매	원	10,000원	매	원
5,000원	매	원	5,000원	매	원
2,000원	매	원	2,000원	매	원
1,000원	매	원	1,000원	매	원
700원	매	원	700원	매	원
500원	매	원	500원	매	원
400원	매	원	400원	매	원
300원	매	원	300원	매	원
200원	매	원	200원	매	원
100원	매	원	100원	매	원
60원	매	원	60원	매	원
50원	매	원	50원	매	원
40원	매	원	40원	매	원
10원	매	원	10원	매	원
계			계		
할 인 금 액			할 인 금 액		
차 인 금 액			차 인 금 액		
발 행			상기 수입증지를 본 불출증 지참 인에게 지급(교환, 환매) 하시오.		
년 월 일			199 . . 19 . . 수입금출납원 금고 귀하		

제6편 재무 제3장 관재·세외수입 양주군수입증지조례

卷之三

장 10

부  
파  
수  
지  
증  
임  
수

(별지 제6호 서식)

(추 3)

제6편 재무 제3장 관세·세외수입 양주군수입증지조례

(별표 제7호 서식)

수 입 증 지 수 령 증

구 분 종 류	수 량	금 액	적 요
계	매	원	
10원	매	원	
40원	매	원	
50원	매	원	
60원	매	원	
100원	매	원	
200원	매	원	
300원	매	원	
400원	매	원	
500원	매	원	
700원	매	원	
1,000원	매	원	
2,000원	매	원	
5,000원	매	원	
10,000원	매	원	

위 수입증지를 확실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 ○ 읍 면 수입금 출납원.

직  
성 명

④

양 주 군 금 고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수입증지판매인명의(위치)변경신청서

지정번호		제 호	지정년월일		년 월 일
기 자 정 자	판매소 위 치		명 의 ( 위 치 ) 변 경 요 구 자	판매소 위 치	
	주 소			주 소	
	성 명			성 명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명의(위치) 변경 사유					

위 사유에 의거 판매인의 명의(위치)를 변경코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④

양 주 군 수 귀 하

##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구분** : 부분개정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수입증자 판매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지정한 자에 한하여 판매토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신고제로 완화함  
(안 제7조, 제9조)
- 나.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변경 등에 있어 사유발생 예정 10일전에 군수, 읍·면장에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2일전까지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 함(안 제11조)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관련 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 예고결과** : 해당없음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양주군수입증지조례

제6편 재무 제3장 관세·세외수입 양주군수입증지조례

(별지 제9호 서식)

수 입 증 지 판 매 ( ) 신 고 서

지정번호	제 호		지정년월일	년 월 일
지정인	소재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사유발생 년 월 일			
신고사항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⑪

양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수 입 증 지 요 금 계 기 관 리 대 장

월 일	카드번호	금 일 까 지	전 일 까 지	금일결손(C)			금일발행(A-B-C)			결 재		
		카드금액(A)	카드금액(B)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담당	담당주사	과장

\* 조정카드는 1일 1매를 원칙으로 한다.

(주 3)

## 양주군수입증지조례증개정조례안

개정구분 : 부분개정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수입증지 판매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지정한 자에 한하여 판매토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신고제로 완화함  
(안 제7조, 제9조)
- 나.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변경 등에 있어 사유발생 예정 10일전에 군수, 읍·면장에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2일전까지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 함(안 제11조)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관련 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 예고결과 : 해당없음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양주군수입증지조례